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6월 1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6월 3일

나. 제 출 자: 최동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 6. 1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최동철 의원)

가. 제안이유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안 제1～2조〕 목적 및 용어 정의

2)〔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

3)〔안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규정

○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 등

4)〔안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대한 규정

5)〔안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

6)〔안 제7조~8조〕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합　　의: 자원순환과

다. 기　　타: 입법예고(2020. 6. 5. ~ 6. 9.)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방지와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 이번 조례안 제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거쳐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자원낭비의 예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